##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87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최수진・김 건・강선영

구자근 • 박준태 • 임이자

김예지 • 조정훈 • 박충권

김소희 · 안상훈 · 조승환

이달희 · 서지영 · 김종양

우재준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 제45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한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며 이러한 직무상 발언은 회의체인 국회활동의 근본이 됨.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함.

현행 「국회법」에서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고, 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위원에 한하여 위원장은 제한적으로 발언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정감사에서 개별 국회의원이 부여받은 발언권한을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등 국회 질서 유지권을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국 회법」 제155조(징계)에는 회의에서 부당하게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 을 금지시켜도 이를 처벌할 요항이 없는 만큼 국회의원의 발언권 보 장을 위한 보호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55조제8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부당하게 의원의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킨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	제155조(징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			
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의2. 제1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본회의 또		
	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부당		
	하게 의원의 발언을 금지시키		
	거나 퇴장시킨 경우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